##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4

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권영세·조경태·이인선

강대식 • 주호영 • 김정재

곽규택 · 안철수 · 임이자

서일준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,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.

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,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 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31조(결격사유)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		
공무원이 될 수 없다.		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		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	6의3		
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			
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			
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			
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			
사람	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		
	<u>률」에 따른 죄</u>		
6의4. ~ 8. (생 략)	6의4. ~ 8. (현행과 같음)		